

한 추후보도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중재부의 확인만을 거치도록 하고 바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한동원, 2001).

여섯째 선거보도와 관련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반론보도청구를 위해 방송에 의한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정기간행물에 의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양삼승, 2000). 언론피해구제법(시안)에서는 선거관련 보도에 대해 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사의 입장과 견해를 첨부하여 그 결정사항을 이행토록 하며, 직권중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또는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곱째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해 중재제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이 전통적인 대중매체들과는 달리 수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즉 인터넷의 쌍방향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신문이나 방송은 전통적인 종이신문이나 지상파/케이블 방송과 같이 대중매체로 간주하여 이들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양삼승, 2000).

그밖에도 중재신청인은 한 번의 불출석으로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언론사에 대해서는 2회의 불출석을 취하로 간주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일부 문제점들이 지적되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4. 소송을 통한 구제와 개선방향

미국의 헌법학자 샤우어(Schauer)는 명예훼손법은 각 사회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해결은 각 사회가 명예의 중요성과 언론자유에 두는 사회적·정신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이재진, 2002a 참조). 미국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대체로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명예보다 더 중시하는 것과 달리, 우리 나라와 일본은 프랑스나 독일의 대륙법계 전통을 따라 언론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를 더 중시해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명예의 침해에 대해 형법과 민법에서 모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언론관련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은 제309조 1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고의성)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조 2항에는 특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제310조에서는 위법성의 조각 사유로서 언론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진실성)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공공성)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진실성과 공공성을 판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비록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했으며, 표현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사항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면책할 바 있다. 그리고 공공성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행위자의 목적이나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그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일 경우 그 평가를 달리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재진, 2002b; 배금자, 2002).

한편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주의 결여와 같은 과실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현실적 악의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보도한 경우, 또는 거짓인지 아닌지 전혀 개의치 않고 보도한 경우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재진(2002a)은 미국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현실적 악의를 구성하는 행위유형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것은 첫째 증거의 인멸, 둘째 고의적 조작, 셋째 사실 왜곡, 넷째 부주의한 무시, 다섯째 사적인 감정 의존 등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이 현실적 악의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명예훼손 소송 추이를 보면, 80년대 이전까지는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그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80년대까지 손해배상 인용액이 3,000만원 미만이던 것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 3,6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95년 이후에는 1억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언론의 책임을 점차 엄중하게 묻는 경향이 있다.

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조준원, 2000)에 의하면, 원고 유형별로는 전체 139건 가운데 사인이 원고인 경우가 58.4%인 80건, 유명인이 30건(20.4%), 공직자가 12건(8.8%), 일반단체가 11건(8.0%), 기업체 6건(4.3%) 순이었다. 특히 공직자가 소를 제기한 건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 90년대 전체 12건 가운데 무려 8건이 98년과 99년에 제기되었다. 1999-2001년에는 검사들이 때로는 10-22명씩 집단으로 모두 11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배상청구 금액도 최저 5억에서 최고 36억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공직자가 원고인 경우 전체 12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하여 승소율은 무려 91.6%에 이르러 사인(75%)이나 유명인(67.6%), 기업체(66.6%), 일반단체(45.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원고 유형별로 손해배상 인용액의 규모를 보면, 공직자는 평균 약 5,400만원인데 비해, 유명인은 약 4,190만원, 사인은 1,613만원에 불과하여 우리 법원이 공직자의 명예권 보호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공직자는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인 공공의 이익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이 공직자들을 기사로 다룰 때 사인들의

경우보다 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언론보도에 위협적 효과(chilling effect)를 미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자유로운 언론에 의한 권력감시라고 하는 근대적 저널리즘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재진, 2002b).

앞에서 보았듯이 헌법재판소가 1999년의 결정에서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하여 공적 인물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법원의 판례들은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지는 않다(배금자, 2002). 예컨대 대전법조비리보도와 관련하여 검사 22명이 집단으로 MBC방송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MBC의 해당 보도가 법조계 전체의 고질적 비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룬 점에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도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한 검사들이 그 보도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해 준 것은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분명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언론보도 관련 명예훼손 소송 건수나 손해배상 인용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 역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명예훼손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민주화라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손해배상 인용액이 늘기는 했어도 일부에서는 그것이 여전히 보전적 배상에 그치고 징벌적 배상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에서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인용액을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조준원, 2000).

바람직하기는 우리 법원이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폭넓게 용인하는 쪽으로 가되,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언론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조작, 왜곡하거나 기본적인 사실확인 작업을 무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중적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나라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중재신청과 명예훼손 소송이 급격히 늘어났다. 언론사들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보도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언론윤리 및 법제 교육과 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사내에 옴부즈맨이나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사의 보도기사에 대한 상시적인 비평과 검토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처럼 철저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권 침해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단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론사는 즉각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부 언론사들이 시도하고 있지만, 사내에 이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도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피해구제를 위한 우리의 독특한 제도로서 그 편리성을 인정받아 자리를 확고히 했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는 그러한 논의가 법제화로 결실